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47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 박충권·강선영·김성원

정동만・조정훈・김 건

유상범 • 신성범 • 김승수

김기현 · 김상욱 · 최보윤

최은석 · 김용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3만 4천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통 일부에는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인단체가 등 록·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며 북한이 탈주민 사회의 구심점도 부족한 상황임.

한편,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먼저 온 통일'로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고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지원·통일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단체의 설립) ①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 2. 북한이탈주민 생활향상,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 4.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
- 5.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정책 건의
-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권익향상을 위한 국내외 인식개 선 및 여론조성사업

-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운영과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2(단체의 설립) ① 북한
	이탈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u>능력을 배양하고 북한이탈주민</u>
	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
	<u>다.</u>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
	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상부
	<u>상조를 통한 친목도모</u>
	2. 북한이탈주민 생활향상, 복
	지증진 및 권익신장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4.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
	5.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정

책 건의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권익향상을 위한 국내 외 인식개선 및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 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 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단체운영과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다.